



▲ 이틀간의 세미나 일정이 끝나고 한국양돈수의사회 연례세미나를 기념하여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동물복지의 세계적 추세

본 원고는 한국양돈수의사회가 지난 6월 21일~22일 용인 양지파인리조트에서 개최한 '제6회 한국양돈수의사회 연례세미나'에서 박수진, 문두환, 김경진 수의사가 발표한 <동물복지의 세계적 추세>를 게재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복지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으로 넘기고 있으나, 국제적인 상황이나 소비자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볼 때, 가까운 시일 안에 동물복지 문제는 우리 축산업계 전반에 있어 커다란 현실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는 동물의 사육, 수송, 도축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인도주의적 접근법에 따른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국내판매 또는 국제무역에 있어 일정적인 제한을 야기할 수도 있게 됨을 의미한다.

1. 동물복지란 무엇인가?

국내 동물복지라는 개념이 자리잡고 인식하게 된 것은 바로 개고기의 문화 때문이다. 19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를 치르며 외신 기자들에 의해 집중적인 관심을 갖게 되며 동물복지의 대한 부분이 불거져 나왔다. 또한 두 번째로 동물복지는 견해적 차이로부터 시작되었다. 동물은 도덕적, 인간과 공존하는 존재이며 동물복지, 권리, 해방 등을 중요시하는 일월론(환경중심적)과 동물은 도구적 존재이며 인간이 이용해야 할 대상이라는 이원론(인간중심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집단적 동물 견해 분류>

동물 상업활용	동물 이용	동물 복지(생산자 입장)	동물 권리	동물 해방
인간의 절대적 지배권	스포츠, 영리목적 남용 가능	음식, 의생명과학연구, 오락, 노동, 의복	위해로부터 동물 보호 필요에 의해 동물 이용 법의 규제와 기준	동물의 천부적 권리- 식용, 실험, 게임, 학대, 도살 당하지 않을 권리
	동물실험, 사냥, 수렵 모피, 축산업, 로데오, 상업적 애완동물 분양, 동물 상인	정부의 동물 복지단체-야생동물, 환경보존단체	동물권리 단체 생체실험 반대	동물이용자 괴롭히기 재산의 파괴
투우, 투건 살아있는 비둘기 사격 멸종위기동물 밀렵, 매매				농장 동물 탈출 등의 비합법적 행위
	동물이용 연구찬성-실습, 육식, 덫 찬성	동물의 식량사용 찬성 일부 제한된 동물실험 찬성 야생동물 보호 찬성	실험, 사냥, 시육 등 동물원 반대 평화적 시위, 불복종 운동	노예해방론 동물과 관련된 상품 거부
도축방법 개의치 않음	빠르고 고통적인 도축- 향상 가능한 것은 아님	도축은 신속하고 고통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통경감의 목적 제외	도축의 반대
위법행위 개의치 않음		동물보호법 강화 주장 동물이용 감시 단속강화	군중시위, 법적 소송 동물구조, 확대방지운동	자신들의 주장이 송고하여 위법이 정당화됨

2. 동물복지의 세계적 추세

가. EU의 동물복지에 대한정책 배경 및 제도화

1960년대 중반 유럽이사회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화가 논의 되기 시작하여, 1968년에는 동물복지에 대한 협정이 이루어졌다. 현재 EU에 있어서 동물복지 문제는 현재 동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보다는 동물에 대한 가혹 행위를 방지하는데 초점이 주어지고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1997년 EU 이사회에서는 동물보호를 위한 5가지 사항을 채택하였다.

5대 자유의 실제적 실현

- 굶주림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 물과 먹이 공급

- 불편으로부터의 자유 - 적절한 사육 환경
- 고통,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 부상방지 및 신속한 도축
-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 적절한 공간 및 시설
- 공포와 고민으로부터의 자유 - 심적 고통방지

EU가 동물복지에서 앞서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소비자가 먼저 동물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축산물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축산물은 충분한 물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30%에서 많게는 200%까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직간접 지불금 형식으로 정부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부분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60%까지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현재 유럽에서는 스톰사용이 금지되도록 입법화 및 기준이 마련되

었으며 WTO에서 이루어지는 수출국가간에는 동물복지부분이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예정이다.

나. 주요 법령 내용

1) 농장에서의 동물복지 규정

- 동물은 가축사육의 전문적 기술과 적절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의 의하여 관리
- 동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사육공간이 확보
- 사육시설에 있어, 동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위해요소 제거
- 동물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계되는 자동화 시설들은 매일 점검되어야 하며, 고장 시 즉시 수리
- 동물들에게 품종과 연령에 따라 적절한 물과 먹이 급여

2) 도축장에서의 동물 복지 규정

- 도축장 종업원은 도축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어야 함.
- 가축은 반드시 기절 시킨 이후 죽여야 함
- 식용 육류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인가된 도축장에서 생산
- 부상당한 동물, 질병이 있는 가축은 도축장으로 수송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살하여야 함

3) 동물의 수송중의 동물복지 규정

- 수송되는 모든 동물의 소유자, 목적지 등이 등록되도록 함
- 동물 수송을 하는 사람은 동물 수송에 필요한 적절한 지식과 방법을 알아야 함
- 수송과정에서 적절한 물과 먹이의 공급, 적절한 휴식 등을 위한 계획이 확보되어야 함
- 동물의 수송과정이 지연되어 동물이 고통받

지 않도록 항만, 공항, 철도, 국경조사 등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EU 각계동향

EU 15개 회원국 중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보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높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등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통일된 EU공동체 규정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동물복지가 강조되는 쪽으로 법률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소비자 보호 및 보건총국(국내의 보건복지부)에서는 동물복지가 동물건강 및 식품안전에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며, 농업총국(국내의 농림부)은 동물복지를 위한 정부지원은 WTO농업 협상 허용 보조금으로 주장하는 한편, 기존 EU 공동 농업정책에 의한 여러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동물복지와 연계시키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 최대 농민단체인 COPA/COJECAs 동물복지 문제는 아직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규정이므로 EU내의 농민들에게만 강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동물복지 규정을 준수함에 따르는 추가 비용은 정부에서 적절히 보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3. 한국양돈복지 실행의 당위성

WTO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는 직접 보조금을 줄 수 없지만 동물복지의 경우 복지란 이유로 간접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이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 복지 프로그램을 준수한 국가에서만 수입이 가능토록 하려는 입장으로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자들의 입장은 소비자들에



▲ '동물복지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박수진 수의사



▲ '세계의 동물복지 현황' 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문두환 수의사



▲ '한국 양돈복지실행의 당위성' 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김경진 수의사

게 어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준수하여 자국의 돼지고기를 소비자가 더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현재 미국 또한 유럽이나 여러 나라에서의 요구에 의해 동물복지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수직계열화 구조에 의해, 예를 들어 소비자가 동물복지를 요구하고 이에 맥도날드는 그 요구를 받아 들여 도축장에 다시 도축장은 농장에 동물복지를 요구함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동물복지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 제도적 뒷받침도 이루어져야 한다.

캐나다는 CQA라는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CQA는 HACCP을 기준으로 동물복지 프로그램이 추가가 된 것이다. 미국은 SWAP이라는 양돈복지 인증 프로그램이 있으며 각 농장에 직접 양돈복지규정 준수(9가지 관리 및 복지 기본 원칙)를 체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학적이고도 실용적인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동물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까지도 국제적인 추세에 뒤떨어지는,

동물복지라 하면 알레르기 반응만 보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생산자가 스스로 나서서 무역보호 장벽을 만들고 실리를 챙기고 준비하고 있다. 국내는 정부차원의 접근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생산자가 미래에 대비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어느 농장에서나 할 수 있도록 국내의 복지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도 국제적으로 청정하고 차별적으로 사육하고 있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알릴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은 10년, 20년 후를 생각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것은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스스로 각인하고 직접 준비하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양돈**

